

특임교수임용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특임교수는 국내·외적으로 특정 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되며,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거나, 클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선임한다.

제3조(임용절차) ① 특임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,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. (개정 2023.08.01.)

② 특임교수의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. (개정 2023.08.01.)

1. 임용지원서
2. 최종학위 졸업증명서
3. 경력 증명서
4. 담임목사 추천서
5.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

③ 학기말이 임박하거나 개강후에 담당교원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과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 특별채용형태로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8.01.)

제4조(임기) 특임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임용 할 수 있다. (개정 2023.08.01.)

제5조(복무) 특임교수의 복무는 임용조건에 따르며 임용기간 중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교과 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.

제6조(처우) 특임교수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임용계약서로 정한다.

제7조(보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